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219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7. 11.

발 의 자 : 장규권 의원

찬 성 자 : 엄셋별 의원, 고성미 의원

1. 주 문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8조 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·세출 결산 승인의 건,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“구성일로부터 2022.12.31.까지”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·세출 결산 승인의 건,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

3. 관련규정

- 지방자치법 제64조(위원회의 설치)
-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(특별위원회 설치), 제9조(특별위원회 위원)

관련 법령과 자치법규

[지방자치법]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[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]

제8조(특별위원회)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, 위원구성, 활동기간, 활동내용, 소요경비 등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구성, 활동기간, 소요경비에 한정하여 변경 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심사결과나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가 본회의 의결 전인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때까지 특별위원회가 존속한 것으로 본다.

④ 예산안, 결산, 예비비 지출,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⑤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⑥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.

⑦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.

제9조(특별위원회의 위원)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